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42
----------	-------

발의연월일 : 2026. 7. 8.

발 의 자 : 남인순·허종식·손명수
한민수·오세희·이학영
김선민·백선희·이정문
김 윤·서영석·이수진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움.

이에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

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보장기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8조 및 제21조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 없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적극행정 면책 특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제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53조의4(인사상 우대 조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⑦ (생략)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 ①·② (생략)

<신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는 서면(수급자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 없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제53조의3(적극행정 면책 특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제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53조의4(인사상 우대 조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